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0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우재준 · 박정훈 · 박충권
서천호 · 김용태 · 김태호
주진우 · 김위상 · 고동진
배준영 · 김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를 “직계비속등이”로, “대학생”을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학교”를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1. ----- ----- ----- ----- ----- -----. <u>직</u>

<u>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u>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u></u>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u>학교</u>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 라. (생략) 2.·3. (생략) ④ ~ ⑪ (생략)	<u>계비속등이</u>----- ----- -----<u>대학생</u> <u>· 대학원생</u>----- ----- ----- -----. 가. ----- ----- -----<u>학교</u> <u>(대학원을 포함한다)</u>----- ----- ----- ----- 나. ~ 라.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④ ~ ⑪ (현행과 같음)
---	---